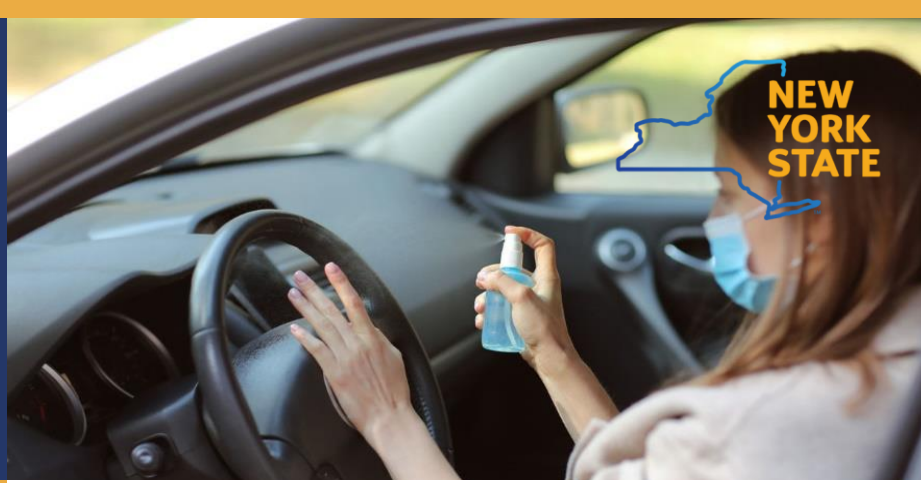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역의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판매, 리스, 렌탈에 대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Vehicle Sales, Leases, and Rentals)을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 필수 | 권장 모범 사례 |
|----------|--|---|
| 물리적 거리두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활동의 안전을 위해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간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 현재 업무에 필수적인 직원으로 출근 제한 및/또는 영업 시간을 조정하여 직원과 고객 이동을 장기간에 분포하는 등 대면 접촉 및 밀집을 완화합니다. ✓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에 대하여 직원 및 고객의 수는 점유 증명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최대 점유 인원의 50 퍼센트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6 피트의 공간을 유지하고 모든 경우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직원이 시운전하여 고객과 동행하는 경우 직원은 가능한 고객과 떨어져 탑승하고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기 공간에서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6피트 거리를 두고 착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은 필수 직원으로 제한합니다. ✓ 근무 공간 및 직원 좌석 수를 변경/제한하여 직원들이 모든 방향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반드시 청소 및 소독 후에 공용 스테이션 및 좌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예약 고객에 한해 방문, 시운전 및/또는 렌트를 실시하도록 장려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직원이 일하고 고객이 내점했을 때 직원과 고객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피트 떨어져 있도록 전시장 및 판매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 쇼룸 또는 주차장 전체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이동량을 줄입니다. ✓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입구와 출구를 지정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외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시각적 신호 사용 등). ✓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세웁니다. ✓ 고객이 동반자 없이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가능한 경우 커브사이드 픽업 및 드롭오프를 실시합니다. ✓ 밀폐된 공간에서 보거나 렌탈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제한합니다. ✓ 시운전이나 차량을 렌탈하지 않는 경우, 차량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모든 개인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 미만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역의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판매, 리스, 렌탈에 대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Vehicle Sales, Leases, and Rentals)을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 필수 | 권장 모범 사례 |
|------------|--|---|
| 보호 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입점하는 모든 고객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등), 수술용 마스크, 페이스 쉴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고용주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는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직원들은 고객 또는 다른 직원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고객과 접촉할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물건 및 접촉이 잦은 표면(전자 및 열쇠 등)의 공유를 제한하거나 공유 물건 또는 접촉이 잦은 표면과 접촉할 때는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또는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의무화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차량을 시운전할 경우, 모든 사람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 |
| 위생 청소 및 소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및 보건부(DOH)의 위생, 청소, 소독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날짜, 시간, 범위에 대한 기록을 현장에 보관하십시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면 안전 예방 조치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로 환기합니다(창문 및 문 열기). ✓ 청소 및 소독이 어려운 차량(천 소재 시트 등)의 테스트 주행을 허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역의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판매, 리스, 렌탈에 대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Vehicle Sales, Leases, and Rentals)을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 필수 | 권장 모범 사례 |
|-----------------|--|--|
| 위생, 청소 및 소독(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근무지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 손 소독제는 장소 전체에 배치해야 합니다. ✓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수용 인원을 줄임으로써 화장실에서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화장실 등)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장소 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을 사용합니다. ✓ 고객 픽업 또는 시운전 전, 고객의 차량 반환 후 모든 차량(내부 및 외부)과 열쇠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제품을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을 설치,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제품에 접촉하는 직원 수를 제한합니다. ✓ 음식 및 음료의 공유를 금지합니다(뷔페 스타일 식사). ✓ PPE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건물 주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 셀프 서비스 바, 자판기, 카페 및 식사 공간을 포함한 모든 편의 시설을 폐쇄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공유 표면, 기타 구역을 포함하여, 공유 물건의 세척 및 소독은 최소한 근무자가 작업 스테이션을 변경하거나 고객이 차량에 접촉하는 빈도 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



뉴욕 재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역의 차량 판매, 리스, 렌탈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판매, 리스, 렌탈에 대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Vehicle Sales, Leases, and Rentals)을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차량 판매, 리스, 렌탈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 필수 | 권장 모범 사례 |
|----------|---|--|
| 의사소통(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도록 시설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직원의 코로나19 검사가 양성인 경우 운영자는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하고 접촉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잠재적 접촉자에 대한 통보가 포함되며 주 및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프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전자적 전송 방식을 통해 서류 작업을 교환하고 가능한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합니다. ✓ 직원 및 고객을 위해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 표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
| 선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픈 직원은 직장에서 병에 걸렸다면 자택으로 돌아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확진 사례 발생에 대비해 청소, 소독 및 접촉 추적 계획을 세우십시오. ✓ 업무 개시 전 직원, 하청업자, 기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필수 건강 선별 평가(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진행하며,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밀접한 접촉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을 매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밀집 장소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연속적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고객 목록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별자는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사람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고객이 보건 선별지를 작성 완료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추적을 위해 기록 및 연락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 사람이 도착하기 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격 선별(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사람들이 선별 결과가 나오기 전 서로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선별 조치를 조정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